

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313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4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「지역보건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기능 정비

주요내용

-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 및 협의회 명칭 변경을 위한 제명 변경,
- 조례 제정 근거조항 정비(안 제1조)
-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기능 정비 및 각 호의 사항 삭제(안 제2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8. 3. 5. ~ 2018. 3. 25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4
- 방침결정문 : 붙임5

< 불임 1 >

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"를 "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"로 한다.

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시책 등에 관한 심의 및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을 위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'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'는 이 조례에 따른 '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'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보건행정과장 최 진 숙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보건행정팀장 김 현 숙
	담당자 성명·전화	최 은 자 (행정 3463)

< 불임 2 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시행령」 제2조 및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에 따라 보건의료시책과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에 협의·자문을 위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·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.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.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5.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도 및 교육 6.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시책 등에 관한 심의 및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을 위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한다.</p>

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137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. 4. 26.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위원회 및 협의회 기능은 상위법령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각각 약칭을 사용
- 위원회에 속해있는 협의회의 기능규정은 같이 통일적으로 규정함.

□ 주요골자

- 상위법령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약칭 사용함. (안 제2조)
- 협의회를 포함 하도록 하여 기능 규정을 동일하게 사용함. (안 제3조)

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중 “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”를

“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안 제3조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(이하 “협의회”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원 안	개정안	수 정 안
<p><u>제2조(기능)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·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</u></p> <p><u>1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3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4.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</u></p> <p><u>5.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도 및 교육</u></p> <p><u>6.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<u>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②·③(생략)</u></p>	<p><u>제2조(기능)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한다.</u></p> <p><u>3조(구성) (원안과 같음)</u></p>	<p><u>제2조(기능)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-----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-----</u>.</p> <p><u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(이하 “협의회”를 포함한다)는 -----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-----</u>.</p> <p><u>②·③(현행과 같음)</u></p>